무배당 노후愛간병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사 업 방 법 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노후愛간병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노후愛간병보험

* 상품명 중 한자 愛는 한글[애]로 표기하여 “무배당 노후[애]간병보험”으로 표시할 수 있음.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남자	여자
85세만기	10년납	40~70세	40~70세
	15년납	40~70세	40~70세
	20년납	40~65세	40~65세
	80세납	40~70세	40~70세
	85세납	40~70세	40~70세
100세만기	10년납	40~59세	40~63세
	15년납	40~59세	40~62세
	20년납	40~56세	40~59세
	80세납	40~53세	40~59세
	85세납	40~47세	40~53세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함.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의 선납은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나. 보험료를 선납할 때의 할인은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적용하며, 선납할 때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이 아닌 "선납 신청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합니다. 선납 신청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은 전체 보험

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계약 체결시점과 달리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해지계약의 부활에 관한 사항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이 계약의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 + 1%』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제외)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13. 기타

가.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및 단위

(1)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 500만원 ~ 2,500만원

(2) 보험가입금액의 단위 : 100만원

*상기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는 피보험자의 가입나이에 따라 차등될수 있습니다.

나. 동 보험 및 부가특약의 최대 보험가입금액은 피보험자별로 나이 및 직업별 위험정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회사는 상품명칭 앞뒤에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단, 보험대리점의 명칭은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등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상품명 중 한자 愛는 한글[애]로 표기하여 “무배당 노후[애]간병보험”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라.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대면채널로 합니다.

바.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로 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 녹음함으로써 교부 및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